

영등포구의회
제129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7. 6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6. 25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제정(제안) 이유

- 영등포구립도서관이 개관 예정임에 따라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도모 및 향후 위탁운영에 대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
(안제2조)
- 도서관의 운영 및 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제5조 내지 제6조)
-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함
(안제7조 내지 제10조)
-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
(안제11조 내지 제14조)
- 도서관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제15조 내지 제25조)

관련법규

- 도서관법·같은법시행령·같은법시행규칙

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강동구, 양천구, 광진구, 금천구, 성동구, 노원구 등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준공 및 개관예정임에 따라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도서관법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음은 물론 같은법 제29조에 도서관의 설립·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므로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관련 상당액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재정부담을 갖게 되었지만 그 동안 구립도서관이 부재했던 우리구는 3개소의 구립도서관이 개관되면 지역정보화 및 문화발전과 독서진흥에 질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제2조에는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
- 안제5조 내지 제6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조직등에 관한 사항으로
 -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
 - 도서관의 관장은(도서관의 특성상) 사서직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안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
 -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(위원장 부구청장, 7명 이내의 위원)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,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위탁운영의 기간은 3년단위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수탁자가 수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안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 요건으로
 - 위원회는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
 - 위원의 구성은 관장과 문화계·교육계 인사 및 주민대표 등으로 하고,
 - 기능은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사항, 자료의 수집·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,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- 안제15조 내지 제25조에는 도서관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 -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·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
 - 공공질서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 -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수수료와 도서관의 기증자료 및 위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안제27조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 필요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적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7. 6.

보고자 : 이 남 식